

#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8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개혁사무와 관련하여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가. 채무보증서의 교부조문 개정(안 제4조제1항)

나. 보증채무의 이행조문 개정(안 제7조제2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제3조제2항의 내용과 합치 되게 정비하고,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
-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세분화 하고 관계 공무원의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케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여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